

2023년 1인가구 사회적관계망 형성 지원(신규사업) 채용공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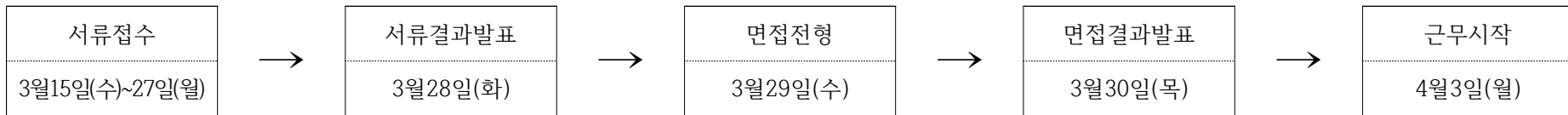
대전광역시가족센터에서는 참신하고 유능한 인력을 모집합니다. 가족사업에 대한 관심과 재능이 있는 많은 분들의 지원을 바랍니다.

2023. 3. 15.
대전광역시가족센터장

◎ 채용대상

순번	담당사업	직급	인원 (명)	자격기준	주요업무	기타
1	1인가구 사회적관계망 형성지원 (신규사업)	팀원	2	○ 각 호(가~다) 중 1가지 이상 갖춘 자는 지원 가능 가. 관련학과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(졸업예정자 포함) 나. 건강가정사 또는 사회복지사 자격요건을 갖춘 자 다. 관련사업 2년 이상 실무경력자 ※ 우대사항 : 컴퓨터 활용능력 우수자, 운전가능한 자	○ 1인가구지원사업 및 가족사업 제반업무 - 1인가구 주요사업 : 심리정서 상담지원, 일상생활프로그램, 사회적관계망지원 등	- 근무 : 월~금, 9~18시 (주말근무시 수당지급 또는 대체휴무실시) - 기간 : 23년4월1일~23년12월31일 (사업운영에 따라 연장가능)
※ 급여(호봉)는 2023년 여성가족부 가족사업안내 지침 호봉에 의거함. ※ 수습기간 3개월 적용 ※ 관련학과 및 관련사업 - 관련학과 : 사회복지학, 가정학, 여성학, 아동학, 청소년학, 노년학, 보육학, 교육학, 상담학, 다문화학 등. - 관련사업 : 가족관련 업무(가족상담, 가족교육, 가족문화, 다문화가족지원, 가족역량강화, 사회복지, 여성가족부 관련기관 근무 등) 종사 경력						

2. 전형방법



- 가. 1차 신청서류접수 : 2023년 3월 15일(수) ~ 2023년 3월 27일(월) 오전 11시까지
- 나. 서류전형 결과발표 : 2023년 3월 28일(화) / 센터 홈페이지 공지 (합격자 개별공지)
- 다. 2차 면접전형(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) : 2023년 3월 29일(수) 10시30분 예정
- 라. 면접전형 결과발표 : 3월30일(목)

3. 접수 및 문의

- 가. 방법 : 우편 및 이메일(dj9989@hanmail.net), 센터 방문(17시 까지)
 이메일 접수시 파일명 : 입사지원_지원자성명_제출일 (예:입사지원_홍길동_20230315)
- 나. 주소 :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크노 6로 40-17, 대전광역시가족센터
- 다. 문의 : 042-252-9989, 932-9995(교육상담팀)

4. 제출서류

- 가. 응시원서, 개인정보제공 및 이용동의서, 자기소개서 각 1부. (필수-당 센터 양식)
- 나. 졸업증명서, 성적증명서 각1부. (필수)
- 다. 건강가정사의 경우 관련 교과목 이수 증명서류 일체 (해당자에 한함)
 - 졸업증명서, 성적증명서, 동일교과목확인서 등
 - 양성교육 수료자의 경우 양성교육 수료증 사본
- 라. 관련 자격증 사본(해당자에 한함)
- 마. 경력증명서(해당자에 한함)
- 바. 취업보호 대상자 증명서(해당자에 한함)

5. 기타(유의사항)

- 가. 아동학대 관련 범죄 및 노인학대 전력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 지원가능
- 나. 경력기간은 공고일 기준이며 접수시 제출서류가 미비하거나 센터 양식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접수하지 않음.
- 다. 직원 자격조건을 모두 충족하고 다른 조건이 동일할 경우 취약계층 우선 채용될 수 있음.

취업취약계층 범주
○ 저소득층 : 기준중위소득 60%이하
※ 건강보험료 납입액(참여자나 제출하는 건강보험료 부과통지서를 통해 확인 또는 사업담당자가 행정정보공공이용센터에 정보이용신청),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등으로 확인
○ 6개월 이상 장기실업자
※ 참여자가 고용보험 피보험자 확인서를 제출하거나 사업담당자가 일모아시스템을 통해 확인
※ 청년(만 29세 이하)은 졸업이후 6개월 이상 경과자를 장기실업자로 간주
○ 여성실업자 중 가족부양책임이 있는 자(여성가장)
※ 여성가장임을 증명할 수 있는 확인서류를 제출한 여성가장
○ 고령자(만 55세 이상)
○ 장애인(장애인 증명서로 확인)
○ 북한이탈주민, 결혼이민자

- 라. 적격자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.
- 마. 채용서류의 반환은 불합격발표를 시점으로 14일 이내로 청구 가능함. (우편, 방문접수에 한함)
제출된 서류내용을 허위기재, 기재착오 등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응시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.
- 바. 최종 합격자가 임용 포기, 합격 취소, 임용 후 즉시 퇴직 등의 사유로 임용하지 못하고 결원이 발생 된 경우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합격기준에 적합한 자 중 차순위를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. 끝.